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최형두의원 · 박수현의원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68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최형두 · 박수현 · 이해민
어기구 · 김은혜 · 이병진
황 희 · 김 현 · 안철수
용혜인 · 박지원 · 조정식
최보윤 · 나경원 · 이개호
조인철 · 김기현 · 황정아
천하람 · 서일준 · 최민희
박수영 · 송석준 · 김상훈
김교홍 · 신성범 · 추경호
정성국 · 서지영 · 김태호
서천호 · 박형수 · 허성무
의원(33인)

제안이유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인 행사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고 경제적 ·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교통·의료·보건 등 각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사업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은 한국은행에게, 기념우표 또는 기념 우편엽서의 발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6조).

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이란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세계청년대회”라 한다)에 관한 직접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청년대회 운영·관리 시설

나. 대회장과 대회장 관련 편의시설

다.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 전시관

마. 대회장 및 체험장, 전시관 등 진입도로

바. 응급의료시설

사.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

아.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청년대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교통시설

나.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위원회의 운영) ①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4. 세계청년대회 참가국 및 국내외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청년대회의 준비·운영,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9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장사업
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
3.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

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조직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

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다만,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여성가족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국무1차장

11.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12. 경찰청장

13. 소방청장

14.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 이사장

15.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지원실무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출입국관리의 협조)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안전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청년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벌칙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청년단체 활동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본다.